

◎ 중소기업부공고 제2026-433호

「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6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체인점포 용어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, 제도 운영상 혼선 소지를 해소하고,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체인점포 정의 신설(안 제2조 제3호)

나. 체인점포 중 직영점형 인정 기준 신설(안 제5조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2026년 7월 26일**까지 중소기업부장관(참조 : 소공인성장촉진단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ejikim104@korea.kr
- 2) 주소 :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
- 3) 팩스 : 044-204-7909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s://www.epe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(전화 : 044-204-728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ss.go.kr>) “주요정책-법령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